

'23 KOMIPO 소셜 그라운드 B트랙 『사회적경제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KOMIPO 소셜 그라운드 B트랙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고도화를 지원하고,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하여 한국중부발전(주)의 후원으로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은 로컬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통하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1 사업 개요

□ 개요

- 사업명: 코미포 소셜 그라운드 B트랙: 사회적경제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 사업일정: 2023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체험 및 여행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보유한 충남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4개소
- 사업내용: 1)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경제 여행프로그램 신규 개발 지원(2개소, 10백만원)
- 직전년도 동사업 참여기업 고도화 후속 지원(2개소, 5백만원)
2) 컨설팅 지원
- 직전년도 동사업 참여기업 고도화 후속 지원(2개소, 3회)
- 주최주관: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후원: 한국중부발전(주)



□ 목적

- 사회적경제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로컬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2 사업 내용

□ 모집 대상

공통	- 여행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업종을 보유한 기업으로, 체험 및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을 갖춘 충남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권장)친환경, 공정여행,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규 (2개소)	- 충남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체험 및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충남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2개소)	- 직전년도 동사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존 프로그램의 고도화 계획을 보유한 기업 - 여행 프로그램 수행 가능한 관련 업종 및 업태 등 보유 기업

□ 지원 내용

- 신규 개발: 신규 체험 및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각 10백만원
- 고도화 지원: 체험 및 여행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각 5백만원 및 전문 컨설팅 3회 지원

□ 세부 진행 절차(신규)

사업 내용	시기	실행 계획
모집 및 심사	5월 ~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 기간: 23년 5월 25일 ~ 23년 6월 15일 ■ 대면 심사: 23년 6월 22일 (사업 참여 신청 기업에 세부정보 별도 안내 예정)
프로그램 개발	7월 ~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조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원 및 현황조사 ■ (프로그램 구성) 목적,콘텐츠등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확정) 발주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프로그램 확정
프로모션	9월 ~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 여행상품 등록 및 프로모션 시작 ■ 여행상품 홍보 ■ 프로그램 참여자를 통한 고객반응 수집
결과보고 및 성과공유회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제출 ■ 한국중부발전 CSR 사업 참여 기업 대상 성과공유회 참여

□ 세부 진행 절차(고도화)

사업 내용	시기	실행 계획
모집 및 심사	5월 ~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 기간: 23년 5월 25일 ~ 23년 6월 15일 ■ 대면 심사: 23년 6월 22일 (사업 참여 신청 기업에 세부정보 별도 안내 예정)
컨설팅	7월 ~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고도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각 3회 지원
프로모션	9월 ~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 여행상품 등록 및 프로모션 시작 ■ 여행상품 홍보 ■ 프로그램 참여자를 통한 고객반응 수집
결과보고 및 성과공유회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제출 (매출 서식 등 첨부) ■ 한국중부발전 CSR 사업 참여 기업 대상 성과공유회 참여

※프로모션 일정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 접수 기간

- 2023년 5월 25일 ~ 6월 15일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mi.socialground@gmail.com
- 이메일 제목: (기업명)사회적경제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참여 신청

□ 제출서류 목록

- 서식1. 『사회적경제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2. 『사회적경제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서식3. 기업정보제공동의서
- 서식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5. 참여인력 현황표
- 서식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컨소시엄 해당할 경우만 제출
- 붙임1. 대면심사 발표자료 ***반드시 PDF 파일로 첨부**
- 붙임2. 법인등기부등본
- 붙임3. 사업자등록증
- 붙임4. 2022년 재무제표
- 붙임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2 기준)
- 붙임5. 기업 BI ai 파일

※모든 제출서류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문의사항

- mi.socialground@gmail.com
- 041)415-2012(내선 3번)
- 070)4420-1389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창업지원실 조혜지
- 충남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 어울림경제센터 3층 301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창업지원실

4 심사 기준 및 선정 절차

□ 심사 방법

- 대면 심사(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 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사업 실행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행 기업의 전문성■ 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지원사업과의 적합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한 부합 정도
프로그램의 적절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전략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세부일정- 세부 추진 일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별, 목적별, 시의적절성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세부 일정의 구체성, 타당성 등■ 권장사항(친환경, 공정여행, 사회적경제기업 협업 등) 반영 여부
기타 관리부문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인원의 적절성■ 프로젝트 관리체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방안, 돌발상황 및 민원등 위험요소 관리■ 기타 제안내용

□ 대면심사 안내

- 가. 발표시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나. 발표자료: [서식2]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 다. 발표일시: 2023년 6월 22일
(기업별 타임테이블은 신청기업 대상 별도 안내)
- 라. 발표장소: 신청기업 대상 별도 안내

□ 선정 방법

- 대면 심사 후 심사위원 별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참여 기업 선정

5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첨부
 - ※ 제출 서류에 있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 발견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감수함

4 예산 및 기타

■ 예산수립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 용도별)	사업비(천원)	주요 산출근거	비고
합 계			

■ 참여인력 현황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귀하

- 본인은 코미포 소셜 그라운드 B트랙: 『사회적경제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신청서, 수행계획서 및 기타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경영지원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활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등록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기업만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자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부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부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부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로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o o o (인)

o o o (인)